

87년도 石油事業基金 운용계획

— 동력자원부 —

정부는 올해에 모두 1조8백16억원의 석유사업기금을 조성, 이중 7천1백16억원을 석유 비축 및 油田개발 등 에너지부문에 사용하고, 나머지 3천7백억원은 국제원유가격 변동등에 대비한 완충용 여유자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유자금 가운데 2천2백억원은 재정자금(자금관리특별회계)으로 활용하고, 1천5백억원은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은 올해 국내 原油도입 단가가 배럴당 17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아래 짜여진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의 조성내역을 보면, 지난 해 이월분 2천5백24억원, 올해 신규징수액 6천7백19억원, 융자금 운용수익 1천1백19억원, 융자금 회수분 4백54억원 등이다.

동자부는 특히 올해의 油價안정추세를 최대한 활용, 석유비축사업에 8백67억원을 사용하고, 국내외 油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작년의 2백16억원에서 6백93억원으로 증액, 국내 대륙붕개발과 5개 해외 유전개발사

업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1개의 해외 유전을 매입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또 석유개발공사 운영비로 1백28억원, 原油도입선 다변화 및 석유품질관리에 1백4억원을 각각 보조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밖에 융자대상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등에 모두 5천3백24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융자대상과 융자조건을 확정 고시했다.

사업별 융자대상자를 보면, ▲ 해외자원개발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자) ▲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사업(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 및 시설대여 회사,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생산자, 집단 에너지 공급자, 주택 단열개수 실수요자) ▲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사업(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자 및 시설대여 회사, 新再生에너지 생산공급자) ▲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범사업(요업·금속·섬유·수송) ▲ 에너지 이용 기술실용화 사업(실용화설비 설치자) ▲ 도시가스 사업(韓國가스公社,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수송가) ▲ 석탄개발 및 저탄사업(연탄제조업자·석탄광업자·무주택 탄광근로자·난방용 塊炭보일러 제조자) ▲ 정유시설 현대화사업(韓國送油管·정유업체) 등이다.

금년도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石油事業基金 운용관리요령

1.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

(1)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세 부 사 업	지원금액 (억원)	응 자 대 상 자
1. 해외자원개발사업	가. 해외자원개발사업	100	• 해외 자원개발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사업	1,600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 및 시설대여회사 •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생산자 • 집단에너지 공급자 • 주택단열개수 실소유자
	나. 代替에너지 이용촉진사업	480	• 代替에너지이용·촉진시설 설치자 및 시설대여회사 • 代替에너지이용 기자재 생산자 • 新再生에너지 생산공급자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시범사업	400	•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시범업자(요업, 금속, 섬유, 수송업자) • 에너지이용기술 실용화설비 설치자.
	라. 에너지이용 기술실용화사업	320	
	小 計	2,800	
3. 도시가스사업	가. LNG공급체제 구축사업	434	•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수용가
	나. 도시가스공급사업	420	
	小 計	854	
4. 석탄개발 및 저탄사업	가. 하계 저탄사업	731	• 연탄제조업자 • 석탄광업자 • 무주택 탄광근로자 • 난방용 피탄보일러 제조자
	나. 석탄광개발사업	165	
	다. 탄광근로자 주택건설사업	39	
	다. 난방용 피탄보일러 보급사업	55	
	小 計	990	
5. 精油施設 현대화사업	가. 송유관 건설사업	30	• 한국송유관(주) • 重質油 분해 및 脫黃시설 건설 석유정제업자
	나. 重質油 분해 및 脫黃시설 건설사업	100	
	小 計	130	
6. 電源개발사업	가. 전원개발사업	150	• 한국전력공사 • 산업기자기개발공사
	나. 다목적 댐 건설사업(임비·주암댐 수력발전부문)	300	
	小 計	450	
	합 計	5,324	

*상기 2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중 나, 다, 라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수급상 불균형의 발생시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원금액을 조정.

(2) 융자조건

가. 해외資源 개발사업

- 용자규모: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연리 8%
- 상환기간: 5년거치, 5년분할상환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 용자규모
 -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70% 이내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생산자, 代替에너지이용 기자재 생산자, 新再生에너지 생산공급자, 에너지 이용기술 실용화 설비 설치자에 한하여 지원)
- 이자율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사업: 연리 10% (대여금리 8.5%)
 - 代替에너지 이용 촉진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사업, 에너지이용기술 실용화: 연리 5% (대여금리 3.5%)
 - 다만,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10% (대여금리 8.5%), 시설대여 회사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8.5%

○상환기간

- 시설자금: 최장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내
- 운전자금: 최장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내

다. 都市가스사업

- 용자규모: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연리 5%로 하되 융자취급기관에 대한 대여금리는 1.5% 낮은 이율 적용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다만 都市가스 수용기에 대한 시설지원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라. 石炭개발 및 저탄사업

(가) 하계저탄사업

- 이자율: 연리 5%
- 상환기간: 8개월 일시상환

(나) 석탄광 개발사업

- 이자율: 연리 10% (대여금리 8.5%)
- 상환기간: 2년거치 6년분할 상환

(다) 탄광근로자 주택건설사업

○이자율: 연리 8% (대여금리 6.5%)

○상환기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라) 난방용 塊炭보일러 보급사업

- 용자규모: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연리 10%

○상환기간: 1년거치 1년 분할상환

마. 精油施設 현대화 사업

(가) 送油管 건설사업

- 이자율: 연리 10%
-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나) 重質油 분배 및 脫黃시설 건설사업

- 이자율: 연리 10%
-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 電源개발사업

(가) 電源개발사업

- 이자율: 연리 10%
-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나) 多目的댐 건설사업

- 이자율: 연리 5%
-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基金관리기관: 한국석유개발공사

3. 융자취급기관

(1)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의환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2) 都市가스사업(도시가스공급사업)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3) 石炭개발 및 저탄사업

- 1) 하계저탄사업: 대한석탄공사
- 2) 석탄광개발사업: 대한광업진흥공사
- 3) 탄광근로자 주택건설사업: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4) 난방용 塊炭보일러 보급사업: 대한석탄공사

4. 운용요법

(1) 基金대여

가. 융자취급기관은 융자대상자의 월별 융자신청을

받아 대여일 7일 전에 한국석유개발공사에 基金대여 요청

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시점까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대여하며, 대여요청액이 기금조성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금액의 규모와 소진실적을 감안하여 대여액을 조정(필요한 경우 동력자원부는 한국석유개발공사와 협의 사업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다. 基金대여는 담보없이 월 2회로 하고, 대여일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용자취급기관과 협의 결정라. 대여원리금 상환기준

가) 원금: 거치기간 경과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3,6,9,12월의 각 15일)

단, 하계 저탄자금은 기일내 일시상환

나) 이자: 3개월 후취(3,6,9,12월의 각 15일)

(2) 基金용자

1) 용자취급기관은 한국석유개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基金을 본 관리요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용자대상자에 용자(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난방용 피탄보일러사업

의 용자는 별도 사업별 세부지침에 의함)

2) 용자금에 대한 담보로 물적 담보는 생략하고, 상환예정일을 지급일로 하는 용자대상자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갚음.

(다만, 용자취급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용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별 세부지침 또는 용자취급기관의 내규에 의함).

(3) 資金의 용도관리

1) 용자취급기관은 용자받은 基金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보고.

(필요한 경우,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용자취급기관 및 주주에 대하여 실지 조사를 할 수 있음)

2)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용자취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사업의 基金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시행.

3) 용자취급기관은 기금의 용자상황을 익월 7일까지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보고.

4) 한국석유개발공사는 基金의 대여상황과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동력자원부에 보고.

